

「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」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

의안 번호	8-58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3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2018년 제정된 「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」 규약에 대하여 지역교육정책 관련 협력 증진과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감사신설,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마련, 임원의 역할 명기(안 제4조 임원)
-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(안 제5조 임원의 임기)
-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(안 제11조 실무협의회 등)
-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(안 제12조 경비부담)
-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(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)
- 운영세칙 조항 정비(안 제15조 운영세칙)
- 별지 서식 추가(가입신청서 및 위임장)
- 회원도시 현황 수정(신규가입도시 반영)

□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현황

설립일	가입일	규약의회의결	규약고시	비고
2018.3.31.	2018.8.31.	2019.10.25.	2019.11.11.	

- 설립목적 : 지방교육정책 관련 시·군·구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
- 회원도시 : 58개 자치단체(경기 15, 서울 24, 인천1, 충청7, 경상 4, 전라 6, 강원 1)
 - 경기권: 안산, 수원, 고양, 화성, 안양, 시흥, 파주, 의정부, 김포, 광명, 오산, 구리, 안성, 여주, 동두천
- 임원현황
 - 회장 : 오산시장(곽상욱) / 수석부회장 : 송파구청장(박성수)
 - 사무총장 : 연제구청장(이성문)
 - 부회장 : 시흥시장(임병택), 은평구청장(김미경), 당진시장(김홍장), 순천시장(허석), 홍천군수(허필홍)

- 개정 규약안 : 붙임1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- 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사항 없음
-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규약 : 붙임5
 - 방침결정문 : 붙임6

「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」 규약 일부개정안

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4조 [임원]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, 감사 1명을 둔다.
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,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.
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.
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.

- 제5조 [임원의 임기]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- 제11조 [실무협의회 등]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.
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 사항을 처리하거나,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- 제12조 [경비부담] 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납부된 부담금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1.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
2. 포럼,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
3.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

4.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
5.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
6.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

제13조 [회계보고 및 결산]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-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,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감사 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.

제15조 [운영세칙]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.

<붙임 2>

신·구조문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4조 [임원]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.</p> <p>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</p> <p>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,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.</p> <p>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.</p> <p>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4조 [임원]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, 감사1명을 둔다.</p> <p>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</p> <p>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,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.</p> <p>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자체가 사무국이 된다.</p> <p>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.</p>
<p>제5조 [임원의 임기]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 [임원의 임기]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</p>
<p>제11조 [실무협의회 등]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·도 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.</p> <p>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,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</p>	<p>제11조 [실무협의회 등]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 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자체가 주관한다.</p> <p>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사항을 처리하거나,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</p>

<p>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</p>	<p>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</p>
<p>제12조 [경비부담]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	<p>제12조 [경비부담] 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. ② 납부된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. 포럼,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3.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 4.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5.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.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
<p>제13조 [회계보고 및 결산]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</p> <p>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13조 [회계보고 및 결산]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</p> <p>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,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.</p>
<p>제15조 [운영세칙]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</p>	<p>제15조 [운영세칙]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.</p>